



JA(Joint Appointment) 교원 인사관리규정

제정일	2024. 5. 1
개정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행정지원과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조 제3항에 의거 전임교원 중 Joint Appointment 교원 (이하 “JA교원” 이라 한다)의 인사관리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용어의 정의) ① JA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서 학제간 교육·연구·산관학협력·봉사활동 등을 위하여 2개 학과 또는 그 이상의 학과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과 재직 교원 중 JA교원으로 발령받은 교원을 말한다. 단, 행정상 소속학과는 원소속학과와 참여학과로 구분한다.
- ② 원소속학과라 함은 임용 당시의 소속학과 또는 소속 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를 말한다.
- ③ 참여학과란 원소속학과 외에 소속된 다른 학과를 말한다.
- 제 3조 (신규임용) ① JA교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는 원소속학과장 및 참여학과장이 JA교원 임용(변경/철회)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공동 작성하여 학사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반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심사위원 구성은 원소속학과와 참여학과 전임교원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구성이 어려울 경우 원소속학과 또는 참여학과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.
- ③ 기타 신규임용과 관련한 사항은 “교원인사관리규정” 을 준용한다.
- 제 4조 (재직 교원의 임용) ① 재직 교원을 JA교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교원, 원소속학과장과 참여학과장이 JA교원 임용(변경/철회)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공동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재직 교원의 JA교원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- 제 5조 (소속 및 참여비율) 원소속학과와 참여학과에 인사발령하며, 교육·연구 등의 역할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참여비율은 필요시 해당 학과장 간 상호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.
- 제 6조 (원소속 변경 및 철회) ① JA교원의 원소속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원, 원소속학과장과 참여학과장이 JA교원 임용(변경/철회)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공동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재직 교원의 JA교원 원소속 변경 및 철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- 제 7조 (승진 및 재임용) 승진 및 재임용에 관련한 사항은 “교원인사관리규정” 을 준용한다.
- 제 8조 (업적평가) ① 교수업적평가는 원소속학과에서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 참여학과 실적을 포함한 모든 교수업적을 평가할 수 있다.
- ② 교수업적평가에 관련한 사항은 “교원인사관리규정” 및 “교수업적평가규정” 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